

#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

## ■ 서류접수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방문기간  
- 서류제출 : 11월 9일(목) ~ 11월 18일(토) (10일간) 10:00~16:00
-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'23.10.20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-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검증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.
-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.
-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,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.

## ■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필수	추가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※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다자녀 특별 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 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요망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			자녀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
	○		임신진단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 /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
					• 임신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
○		입양관계 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	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
					출입국사실증명서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[용도 :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] ※ 대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